

#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승인의건

의 번 호	제 61 호
의 결 년월일	2003. 5. (제 1호)

제출년월일 : 2003. 5. 20

제출자 : 예산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광역시설 및 자원의 공동개발등 광역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
- 충남 서북부지역의 현안사업에 공동대처 및 공동발전을 모색하고
-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광역사무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
- 8개시·군이 참여하는 서해안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받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협의회 명칭 : 서해안권행정협의회

나. 협의회 구성 : 8개시·군

- 서산시, 보령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, 당진군

다. 규약주요내용(규약별첨)

- 협의회위원 : 서산시장, 보령시장, 서천군수, 청양군수, 홍성군수, 예산군수, 태안군수, 당진군수(8명)
- 회장 : 회의개최지 시장·군수가 하되 시·군 직제순에 의거 윤번제
- 임기 : 6개월
- 협의사항 : 관계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중 다음사항
  -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  -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 조성
  -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
- 버스노선의 신설·변경 및 폐지
-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-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-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-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
○ 회의

- 정기회의 : 매년 3월과 9월 각 1회 개최
- 임시회의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

○ 실무협의회 구성·운영

- 상임위원 : 관계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업무 담당 실·과장
- 비상임위원 : 안건에 관련된 실·과장

○ 미합의 사항 처리

- 미합의된 안건은 관계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 1회에 한하여 다시 상정후 미합의시 안건으로 상정 불가
- 2회에 걸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도지사에게 조정 신청

○ 경비부담 : 각 협의회원이 공동부담

○ 규약변경 : 협의회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변경

라. 규약시행일 : 2003. 7. 1

### 3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4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

※ 같은법 제142조제2항(지방의회의결사항)

## 서해안권행정협의회규약

제1조(목적) 보령시, 서산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, 당진군간에 관련되는 현안 협의와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타 협의회위원의 자치단체간 협력과 우의를 돋구어 함으로써 각 자치단체의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서해안권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제2조(사무소 위치)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에 둔다.

제3조(구성) 협의회는 보령시, 서산시, 서천군, 청양군, 홍성군, 예산군, 태안군, 당진군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조직) ①협의회의 위원은 보령시장, 서산시장, 서천군수, 청양군수, 홍성군수, 예산군수, 태안군수, 당진군수로 한다.

②회장은 회의 개최지 시장·군수로 하고 6개월 임기로 하며 8개 시·군의 시장·군수가 윤번제로 맡는다.

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④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기 개최지 시장·군수가 회장을 맡는다.

⑤협의회 위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시 부시장·부군수가 대신 위원으로 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.

제5조(협의사항)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광역행정중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행
2.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
3. 도로의 신설 및 개수·보수
4. 버스노선의 신설·변경 및 폐지
5. 상·하수도 시설의 설치
6.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 사항
7. 자원의 개발,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
8.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항
9.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6조(협의방법) ①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협의안건의 합의는 위원 전원의 찬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안건 관련 자치단체 협의회 위원만의 찬성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제7조(회의)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각 1회 개최한다.

③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8조(실무협의회)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며 상임위원은 관계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업무 담당 실·과장으로 하고 비상임 위원은 안건에 관련된 실·과장으로 한다.

③ 실무협의회장은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상임 위원이 된다.

④ 회의는 실무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실무협의회장이 소집한다.

⑤ 실무협의회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록 작성)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행정협의회 회장을 맡은 자치단체의 행정협의회 업무 담당이 된다.

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10조(미합의 사항 처리)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더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더 이상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.

② 협의회에서 2회에 걸쳐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에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경비부담)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각 협의회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할 수 있다.

제12조(회계) 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회의 때마다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.

제13조(규약변경) 이 규약의 변경은 협의회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변경한다.

제14조(보칙)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2003. 7. 1일부터 시행한다.

西海岸圈行政協議會

保寧市長 李時雨

洪城郡守 蔡玄秉

瑞山市長 曹圭宣

禮山郡守 朴鍾淳

舒川郡守 羅紹烈

泰安郡守 陳泰龜

青陽郡守 金是煥

唐津郡守 金洛聖